

경상북도 고시 제2020-348호

월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의거 월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9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월향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

I. 농공단지 일반현황

1. 농공단지개요 (변경)

- 명 칭 : 월향 농공단지
- 위 치 : 경상북도 성주군 월향면 장산리

○ 면 적 : 지정 - 257,763m²

변경 - 257,763.3m²

※ 등록전환 된 지적의 면적으로 정정(경계 변경없음)

○ 관 리 기 관 : 성주군수

2. 조성목적 (변경없음)

○ 지역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

○ 농외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3. 시행방법 및 기간 (변경없음)

○ 시행방법 : 「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」, 「국토이용관리법」,

「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」

※ 현행법률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

공영개발

○ 기 간 : 1992 ~ 1994

4. 추진경위 (변경)

○ 1990. 9. 13 : 농공지구 지정(경상북도)

○ 1990. 9. 13 :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(경상북도)

○ 1992. 5. 15 : 농공지구 조성사업 실시승인(경상북도)

○ 1992. 12. 20 : 농공지구 조성공사 착공

- 1994. 11. 19 : 농공지구 조성공사 준공
- 2006. 6. 26 :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[경상북도 고시 제2006-219호]
- 2011. 7. 14 : 산업(농공)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구역 지형도면 고시[경상북도 고시 제2011-265호]
- 2020. 8. 27 :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[성주군 고시 제2020-76호] - 유치업종 변경

5. 분양현황 (변경)

구 분	총면적 (㎡)	분양현황(㎡)					조성 기간	조성 기관
		분양	미분양			계		
			조성	미조성	소계			
기 정	계	257,763	204,840	-	-	-	204,842	1992 ~ 1994 성주군
	산업시설구역	204,842	204,842	-	-	-	204,842	
	지원시설구역	15,661	-	-	-	-	-	
	공공시설구역	37,260	-	-	-	-	-	
	녹지구역	-	-	-	-	-	-	
변 경	계	257,763.3	204,842.2	-	-	-	204,842.2	1992 ~ 1994 성주군
	산업시설구역	204,842.2	204,842.2	-	-	-	204,842.2	
	지원시설구역	15,660.6	-	-	-	-	-	
	공공시설구역	37,260.5	-	-	-	-	-	
	녹지구역	-	-	-	-	-	-	

※ 지원시설구역은 농공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상의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중 배수지, 오·폐수처리장의 합산면적임

※ 공공시설구역은 농공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상의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와 법면임

※ 지원시설구역은 성주군에서 관리(분양 대상에서 제외)

※ 면적 변경 부분은 등록전환 된 지적의 면적으로 정정

6. 입주계획(현황) (변경)

구 분		입주업체수 (개)				면 적 (㎡)			
		제조업체	지원기관	기타	계	제조업체	지원기관	기타	계
기정	계	33	-	-	33	204,840	-	-	204,840
	2005년 1월 현재	33	-	-	33	204,840	-	-	204,840
	향후 계획	-	-	-	-	-	-	-	-
변경	계	33	1	-	34	240,842.2	5,359.3	-	246,201.5
	2020년 9월 현재	33	1	-	34	240,842.2	5,359.3	-	246,201.5
	향후	-	-	-	-	-	-	-	-

※ 지원기관(1개업체, 5,359.3㎡)은 농공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상의 지원시설용지임

7. 입지여건 (변경)

시 설 명		현 황	관리기관	
교통	도로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부고속도로 - 왜관IC(15km) 이용 대구-김천간 국도30호선 이용 통영-구미간 지방도67호선 이용 	한국도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성주군
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부고속도로 왜관IC 이용 : 15km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 이용 : 11.5km 대구-김천간 국도30호선 이용 : 6km 통영-구미간 지방도67호선 이용 : 12km 고령-김천간 지방도905호선 이용 : 1.3km 	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성주군 경상북도
	철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부선 왜관역(10km) 	한국철도 시설공단	
	항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구공항(65km) 이용 	한국항공공사	
	항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항(155km) 이용 	부산항만공사	
단지내 도로	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 = 14m, L = 317m B = 11m, L = 1,085m 	성주군	

시 설 명		현 황	관리기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 = 3m, L = 964m(관리용도로) B = 1.5m, L = 76m(관리용도로) 	
용 수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전상수도정수장 및 자체관정 	성주군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주군 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 용수 수요량 : 2,469m³/일 (공업 : 2,308m³/일, 생활 : 161m³/일) ※ 생활용수 : 단지 동측과 남측의 도시계획도로 변의 광역상수관로(D150mm)에서 분기하는 D50mm~80mm 관로(L=1,560m)(단지내)를 통하여 각 시설로 인입 ※ 공업용수 : 심정(관정) 개발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며, 단지내 배수지(용량 : 1,400ton)에서 D80mm~150mm 관로(L = 1,780m)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에 공급 	성주군
전 력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압 229kv, 용량 8,000kVA 	한국전력공사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공단지내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최대부하 : 16,128kw(산업시설 : 15,478kw, 지원 및 공공시설 : 650kw) 용량 : 21,531kVA(산업시설 : 20,809kVA, 지원 및 공공시설 : 722kVA) 	한국전력공사
통 신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주전신전화국 	성주 전신전화국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공단지내 통신은 통신사업자가 공급 통신수요량 : 629회선(산업시설 : 615회선, 지원시설 : 14회선) 	통신사업자
환 경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폐수처리장 : 3,000톤/일 	성주군, 월항농공단지협의회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폐수처리장 : 3,000톤/일 오·폐수 발생량 : 2,087m³/일(폐수 : 1,966m³/일, 오수 : 121m³/일) ※ 오·폐수 :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는 하수관로(D350mm, L = 1,920m)를 통해 단지내 설치된 오·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단지의 별도의 하수관로(D400mm, L= 2.3km)로 인입되어 최종 백천으로 방류 	성주군, 월항농공단지협의회
폐기물	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발생량 총 125.3톤/일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폐기물 : 123.8톤/일 - 생활계폐기물 : 1.5톤/일 ※ 생활폐기물은 성주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하며,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토록 계획 ※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,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,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토록 계획 	입주기업

II.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

1. 기본방향 (변경없음)

-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 소득 증대
- 농공단지 용도별 면적 구획으로 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
- 환경보존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

2.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(추가)

- 농공단지의 면적 (단위 : m², %)

총면적	세 부 면 적				비 고
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
257,763.3 (100.0)	204,842.2 (79.5)	15,660.6 (6.1)	34,260.5 (14.4)	-	

3. 입주대상 업종,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, 농공단지 발전계획

(기정 : 입주대상 업종,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) (변경)

- 입주대상업종

- 기정

- 섬유, 의복, 목재, 종이, 철강기계, 비금속 등【별표 1】과 같음

※ 단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
■ 변경

- 음식료, 섬유·의복, 목재·종이·출판, 석유·화학, 비금속·소재, 기타 등【별표 1】과 같음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집적법”)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(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)
- ※ 단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
○ 입주자격

■ 기정

-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
-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

■ 변경

- 산업시설구역
 - 입주대상 업종으로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
 - 입주대상 업종으로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적합한 입주기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
 - “산업집적법”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(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)
 -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업성 및 환경성 적합 업체
- 지원시설구역
 -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
 -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 -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-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

○ 입주 우선순위 (변경없음)

-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
-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
- 입주기업체와 계열화,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

○ 농공단지 발전계획 (기정 : 사후관리계획)

-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, 인력수급의 원활한,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,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
-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
-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
-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

4. 생산·수출 및 고용 전망 (변경없음)

구 분	사 업 내 용
생산활동 및 수출증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도별·품목별 생산·수출계획 수립 ■ 생산·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·설명회 등 개최 ■ 품목별·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■ 기타 생산·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
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장자동화 유도 ■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■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■ 해외인증 획득 지원
고용전망 및 근로자 복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가의 유희노동력(주부, 고령자)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■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(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) ■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(지방병무청과 협의) ■ 취업상담실 운영 ■ 유희인력(주부·고령자) 활용방안 강구 ■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 ■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

5. 임금소득,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

(기정 : 임금소득, 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) (변경)

-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

- 생산·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
- 유희노동력(부녀자, 노령자, 실습생)의 적극적인 채용

- 농번기에는 조업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
-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: 농·식품류 우선공급

6.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

(기정 :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) (변경)

-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

구분	입주 업체 수	고 용 인 원 (명)			비 고
		계	기능인력	단순노무	
기정	33	877	412	465	
변경	34	1,427	428	999	농공단지 계획상의 종사자 수로 전망하였으며, 기능인력은 고용인원의 30%예상

-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(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)

구분	인 구 수(명)			취업가능인력 (추 정)
	계	농가인구수	비농가인구수	
기정	47,682	19,787	27,895	1,200명
변경	46,846	14,277	32,569	1,200명

※ 변경 : 2018년 성주 통계연보 기준

○ 관내 제조업체 현황

(단위 : 개, 명)

구분		계	섬유	금속	화공	비금속	식품	기계	전자	목재 출판	기타
업체 수	기정	473	130	36	62	61	37	48	16	21	62
	변경	184	46	29	28	9	4	17	6	13	32
고용 인원	기정	4,312	1,775	248	560	443	165	532	179	94	316
	변경	5,267	935	791	850	162	76	597	204	282	1,370

※ 변경 : 2018년 성주 통계연보 기준

7.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(변경없음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
생산 및 수출증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도별·품목별 생산·수출계획 수립 ■ 생산·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·설명회 등 개최 ■ 품목별·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■ 기타 생산·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
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장자동화 유도 ■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■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■ 해외인증 획득 지원
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■ 업종별·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■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 ■ 공동전시·판매장 설치

8.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

(기정 :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공장배치 계획) (변경)

○ 용지의 용도별 구역 (단위 : m², %)

총면적		세 부 면 적				비 고
		산업시설	지원시설	공공시설	녹지시설	
기정	257,763 (100.0)	204,842 (79.5)	15,661 (6.1)	37,260 (14.4)	-	
변경	257,763.3 (100.0)	204,842.2 (79.5)	15,660.6 (6.1)	37,260.5 (14.4)	-	

※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도(별첨 1), 용도구역별 면적표(별첨 2)

○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■ 기정

- 산업시설구역
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
- 지원시설구역
 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 - 건축법시행령 부표(건축물의 용도분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
- 공공시설구역
 -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
- 녹지시설구역
 - 녹지로 유지·관리

■ 변경

■ 산업시설구역

- 농공단지 계획 상 주요유치업종에 해당되고,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(부대시설 포함)
- 농공단지 계획 상 주요유치업종에 해당되고,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체의 건축물(부대시설 포함)
- “산업집적법”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(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)

■ 지원시설구역

- “산업집적법”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

■ 공공시설구역

-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

■ 녹지구역

- “삭제”

○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

■ 기정

-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시 적정배치
- 기존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,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

■ 변경

-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시 적정배치
- 기존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,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
- 업종별 배치계획

구분	주요 유치업종	업체수 (개)	면적 (㎡)	
계	-	33	204,842.2	
음식료	식료품 제조업(C10)	3	17,833.6	
	음료 제조업(C11)			
섬유의복	섬유제품 제조업;의복제외(C13)	15	90,320.2	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C14)			
목재종이출판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	2	8,315.5	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			
석유화학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C19)	6	34,599.8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(C20)			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		
비금속소재	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	-	-	
기 타	철강	7	53,773.1	
	기계금속			1차금속 제조업(C24)
			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제외(C25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
	전기전자		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
			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
				전기장비 제조업(C28)
	운송장비		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
	기타 제조업			가구 제조업(C32)
기타제품 제조업(C33)				
지식산업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			
정보통신 산업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			

※ 2020년 9월 기준

-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별첨 3

9. 폐수종말처리시설,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

(기정 : 폐수종말처리시설,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설치·운용계획) (변경)

○ 오·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

■ 기정

■ 시설현황

위 치	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(054-931-2108)		
관리기관 운영기관	성주군 기업지원과 월항농공단지협의회	관리인원	2명
차집방식	분 류 식	차집관로	주관로 : 5,096m 지선관로 : 1,260m
수처리방식	가압부상식 (생물학적처리)	슬러지처리 방식	농축 ⇒ 탈수
설계용량	3,000m ³ /일	유 입 량	2,800m ³ /일

■ 수질현황

구 분		항목(단위 : mg/l)				
		BOD	COD	SS	T-N	T-P
설계수질	유입수	387	258	175		
	방류수	30	40	30		
운영수질 (’05.1~’05.12)	유입수	339.8	246	99.3	159.37	3.63
	방류수	15.0	22.5	19.6	41.78	0.647
법정방류수질		30	40	30	60	8
방류수역		이천(월항면 보암리 앞)				

■ 운영계획

구 분	내 용		비 고
처리가능오염물질	BOD, COD, SS		오염물질 및 폐수배출량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의 내용으로 한다
유입 기준	처리가능 오염물질	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(‘가’ 지역, 2,000m ³ /일 미만)이하로 유입	
	처리불가능 오염물질	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(‘특례’ 지역, 2,000m ³ /일 미만)이하로 유입	
	유 입 량	총 300m ³ /일 이하	

(단, 총 300m³/일 이상의 폐수유입시 가장 나중에 입주한 업체는 발생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한다.)

■ 변경

■ 시설현황

위 치	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(054-931-2108)		
관리기관 운영기관	성주군 기업지원과 월항농공단지협의회	관리인원	2명
차집방식	분 류 식	차집관로	D350mm, L = 1,920m
수처리방식	가압부상식 (생물학적처리)	슬러지처리 방식	농축 ⇒ 탈수
설계용량	3,000m ³ /일	유 입 량	2,800m ³ /일

■ 수질현황

구 분		항목(단위 : mg/l)				
		BOD	COD	SS	T-N	T-P
설계수질	유입수	387	258	175		
	방류수	30	40	30		
운영수질 (’19.1~’19.12)	유입수	41.1	38.3	38.5	7.6	0.789
	방류수	8.4	13.4	2.2	4.0	0.029
법정방류수질		10	-	10	20	0.3
방류수역		백천(월항면 보암리 앞)				

■ 운영계획

구 분	내 용	비 고	
처리가능오염물질	BOD, COD, SS	오염물질 및 폐수배출량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의 내용으로 한다	
유입 기준	처리가능 오염물질		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(‘가’ 지역, 2,000m ³ /일 미만)이하로 유입
	처리불가능 오염물질		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(‘특례’ 지역, 2,000m ³ /일 미만)이하로 유입
	유 입 량	총 300m ³ /일 이하	

(단, 총 300m³/일 이상의 폐수유입시 가장 나중에 입주한 업체는 발생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한다.)

○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

■ 기정

■ 기본방향

- 생산 활동지원 및 공공업무, 편익시설의 공간제공
- 입주기업체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검토 후 결정
- 입주업체간 협의회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

■ 지원시설 운영계획

(단위 : 개, m²)

시설명	전체면적		현재		향후	
	시설수	면적	시설수	면적	시설수	면적
복지회관	1	242.98	1	242.98	-	-

- 공동이용건축물

- 용 도 : 단지를 위한 편익·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
- 개발시기 :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용계획에 따라 검토결정
- 유치계획 :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복지시설, 판매장 등

■ 변경

■ 기본방향

- 생산 활동지원 및 공공업무, 편익시설의 공간제공
- 입주기업체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검토 후 결정
- 입주업체간 협의회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

■ 지원시설 운영계획

(단위 : 개, m²)

시설명	전체면적		현재		향후	
	시설수	면적	시설수	면적	시설수	면적
복지회관	1	5,359.3	1	5,359.3	-	-

- 공동이용건축물

- 용 도 : 단지를 위한 편익·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
- 개발시기 :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용계획에 따라 검토결정
- 유치계획 :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복지시설, 판매장 등

10.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·운영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
(기정 :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) (변경)

○ 생산·수출증대 및 고용전망

사 업 명	사 업 내 용
생산 및 수출증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도별·품목별 생산·수출계획 수립 ■ 생산·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·설명회 등 개최 ■ 품목별·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■ 기타 생산·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
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장자동화 유도 ■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■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■ 해외인증 획득 지원
중소기업운영 자금용자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용자금 추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억원까지 용자금 추천 지원(매출규모별 차등지원) - 이자차액 지원(시·도비) - 매월 1회 용자금 추천 지원(설, 추석달은 제외)

○ 사후관리계획

사 업 명	사 업 내 용
안 전 관 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안전관리 예방점검 ■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
토지이용효율 극 대 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부진업체 정상화 추진 ■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 ■ 공장용지 유희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
환 경 관 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보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■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
단지방위체계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지 방호체계 수립 ■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군,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

11. 그 밖에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(추가)

-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“산업집적법” 및 「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과 환경성검토, 분양공고문, 분양유의사항,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

【별표 1】 : 입 주 대 상 업 종

■ 기 정

'05. 1. 현재			향후계획	
입주업종 (산업중분류)	업체 수	면적	입주업종 (산업중분류)	입주업종중 제외업종
계	33	204,840㎡ (61,964평)	계	(산업소분류)
음·식료품 제조업(C15)	2	13,145	· 음·식료품 제조업(C15) · 섬유제품 제조업(C17) · 봉재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(C18)	· 음·식료품 제조업(1511) · 섬유제품 제조업(174) · 봉재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(182)
섬유제품 제조업(C17)	17	89,725	·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C20)	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21)	-	-	·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21)	·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211)
코르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(C23)	-	-	·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5)	·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251)
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4)	-	-	·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6)	
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5)	8	43,660	· 제1차 금속산업(C27) · 조립금속제품 제조업(C28)	· 제1차 금속산업(271, 272) · 도금업(28922)
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6)	-	-	·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(C30)	
제1차 금속산업(C27)	-	-	·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(C31)	· 인쇄회로판 제조업(32192)
조립금속제품 제조업(C28)	-	-	· 전자부품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32)	
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(C36)	6	58,310	·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33)	
			·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C34)	
			·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5)	
			·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(C36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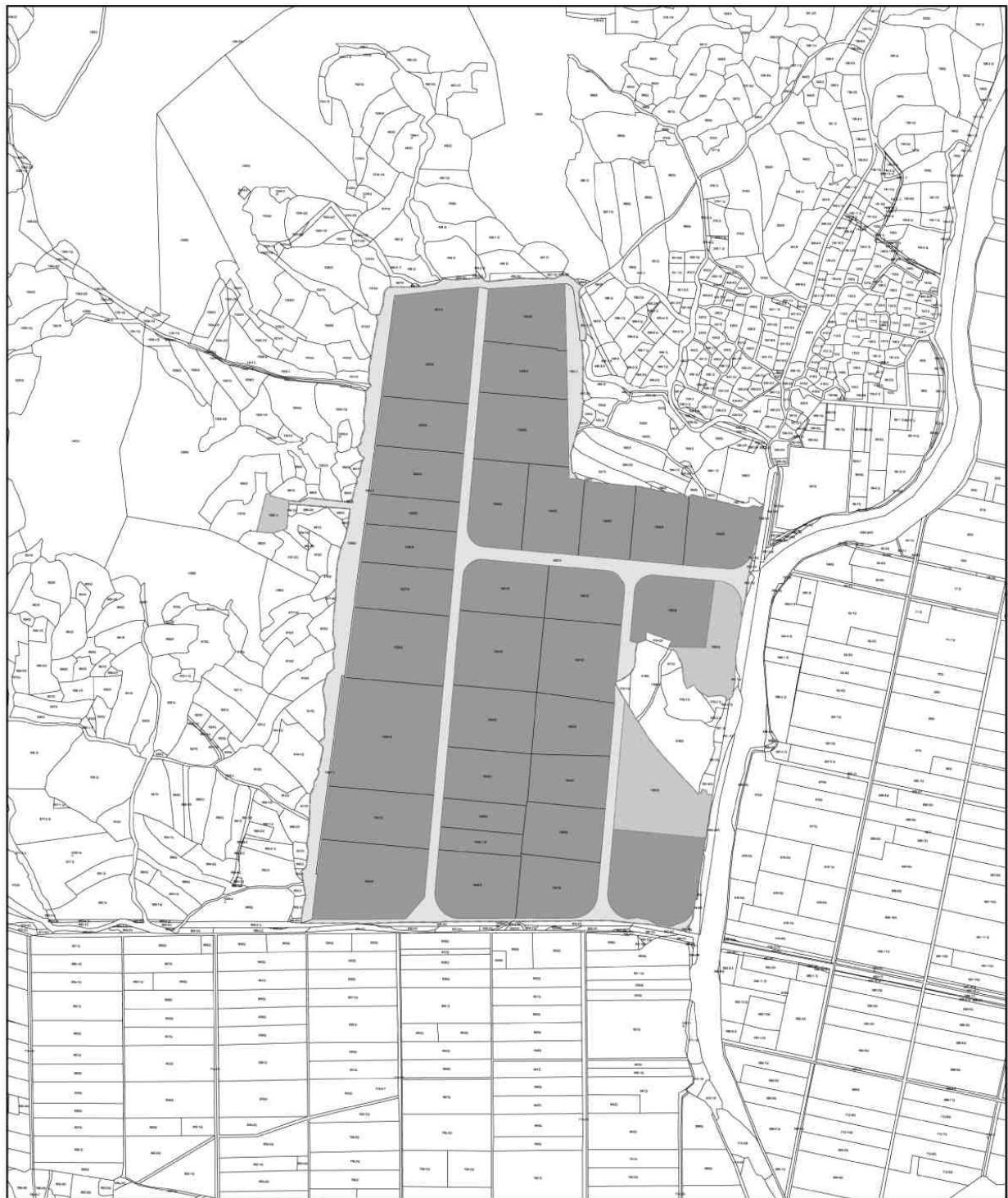
※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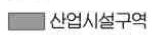



■ 변경

구분	입주대상업종(산업중분류) (2020. 9월)	업체수 (개)	면적 (㎡)	입주업종 중 제외업종		
계	-	33	204,842.2			
음식료	식료품 제조업(C10)	3	17,833.6	C101		
	음료 제조업(C11)					
섬유의복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(C13)	15	90,320.2	C142		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C14)					
목재종이출판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	2	8,315.5			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					
석유화학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C19)	6	34,599.8		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C20)					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			C221	
비금속소재	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	-	-			
기 타	철강	7	53,773.1	C242		
	기계금속		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제외(C25)	C25922	
			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	
	전기전자		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	C2622	
			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		
				전기장비 제조업(C28)		
	운송장비		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		
	기타 제조업			가구 제조업(C32)		
기타제품 제조업(C33)						
지식산업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					
정보통신 산업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					

※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.

별첨 1 : 용도별 구역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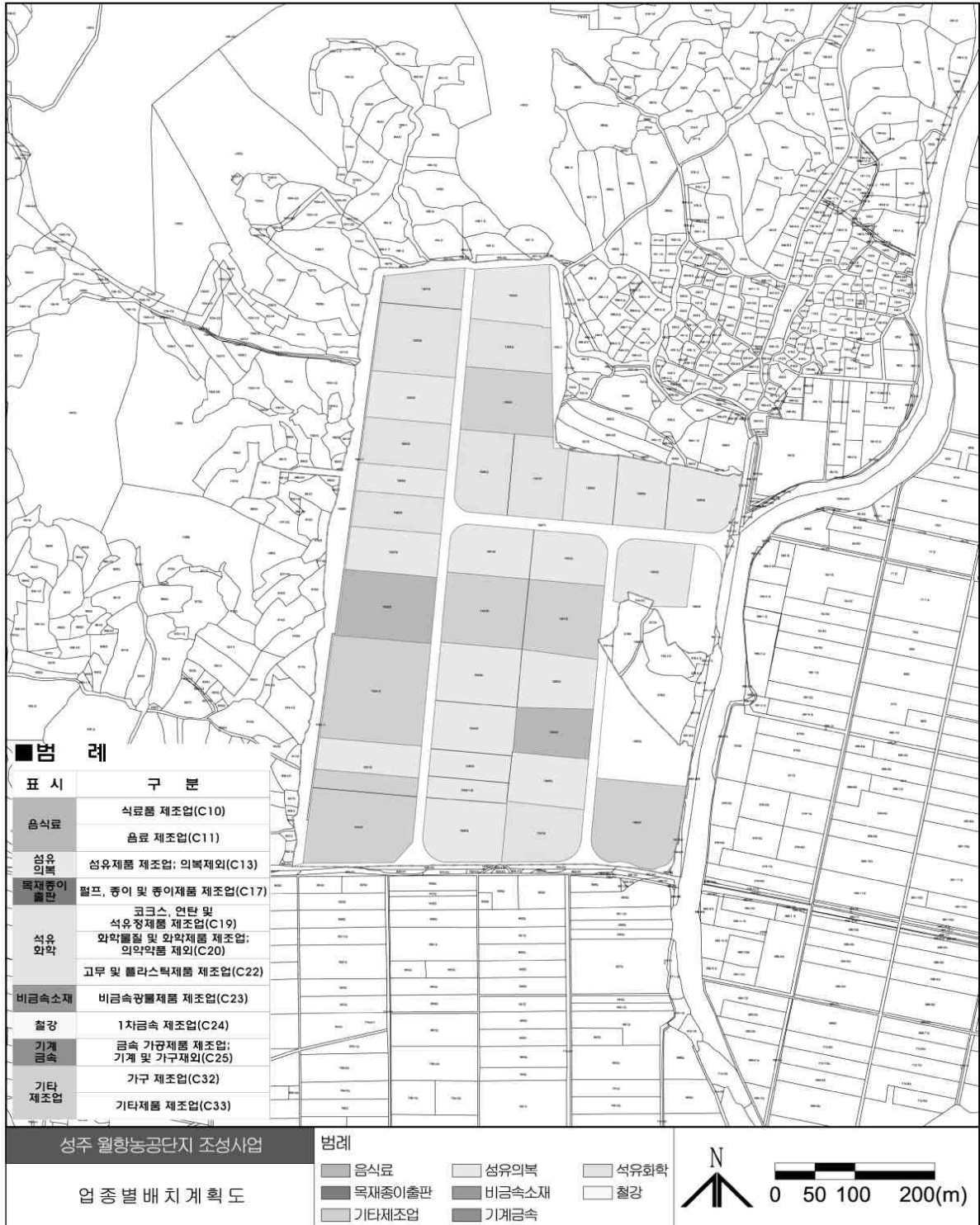
성주 월향농공단지 조성사업		범례		 
용도 구역도		 산업시설구역	 공공시설구역	
		 자원시설구역	 녹지시설구역	

별첨 2 : 용도구역별 면적표 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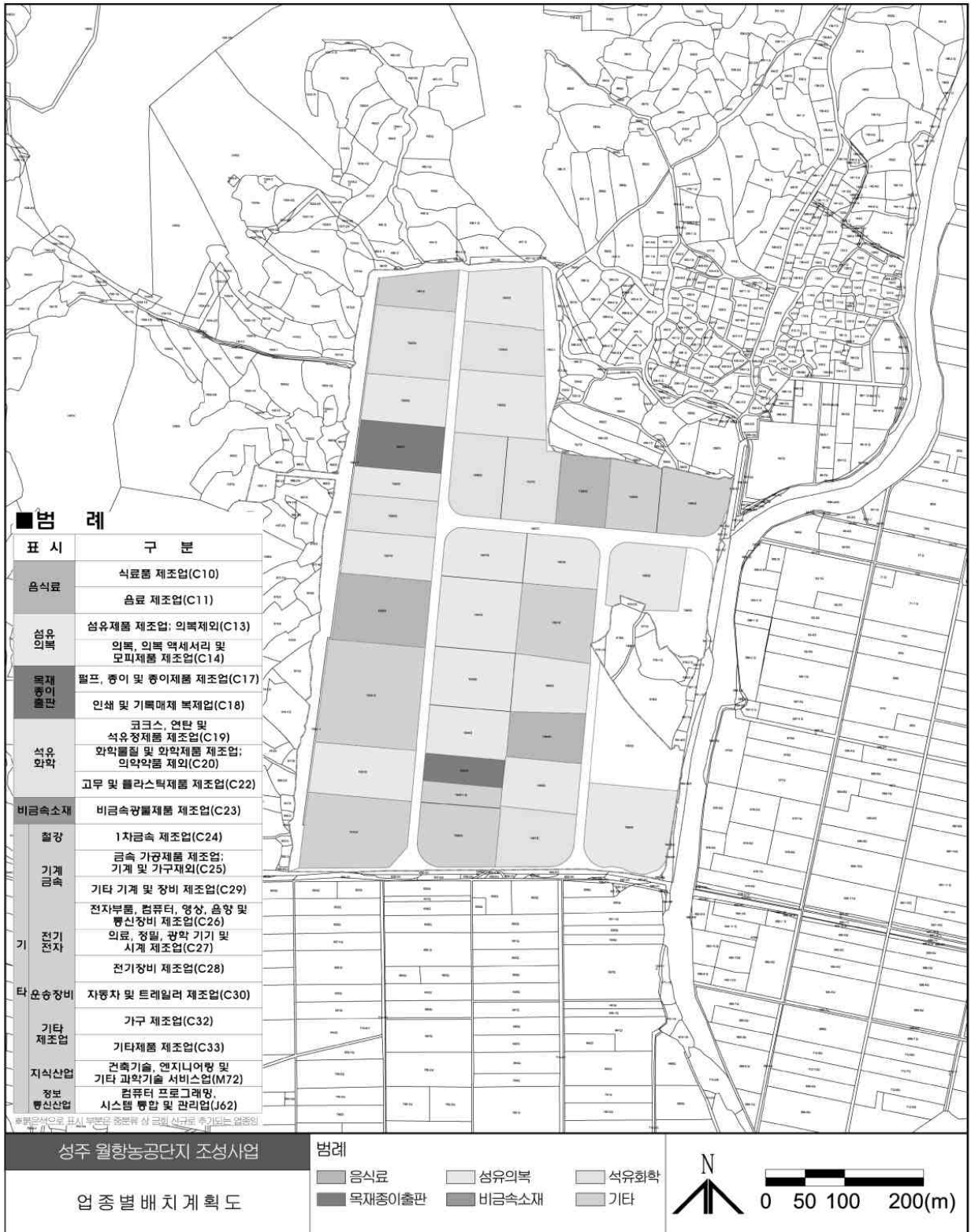
구 분		면 적 (m ²)		구성비(%)
		기 정	변 경	
계		257,763	257,763.3	100.0
산업 시설 구역	소 계	204,842	204,842.2	79.5
	공장시설용도	204,842	204,842.2	79.5
지원 시설 구역	소 계	15,661	15,660.6	6.1
	지 원 시 설	5,359	5,359.3	2.1
	배 수 지	1,394	1,393.6	0.5
	오·폐수처리장	8,908	8,907.7	3.5
공공 시설 구역	소 계	37,260	37,260.5	14.4
	도 로	19,665	19,665.4	7.6
	법 면	17,595	17,595.1	6.8

별첨 3 : 업종별배치 계획도 (변경)

■ 기 정



■ 변경



■ 범 레

표 시	구 분
음식료	식품 제조업(C10)
	음료 제조업(C11)
섬유 의복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(C13)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C14)
목재 종이 출판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
석유 화학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C19)
	화학물질 및 화약제품 제조업; 의약품을 제외(C20)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
비금속소재	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
철강	1차금속 제조업(C24)
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기구제외(C25)
기계 금속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
전기 전자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
	전기장비 제조업(C28)
운송장비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
기타 제조업	가구 제조업(C32)
	기타제품 제조업(C33)
지식산업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
정보 통신산업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

성주 월향농공단지 조성사업

업종 별 배치 계획도

범례

- 음식료
- 섬유 의복
- 석유 화학
- 목재 종이 출판
- 비금속소재
- 기타

